

대학소통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6. 12. 30.
- 개정 : 2017. 12. 28.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대학소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수원과학대학교 대학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본교 교원, 직원, 학생 중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, 각 구성단 위의 정원과 구성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4명으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한 자
2.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3명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직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한 자
3.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3명으로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(총학생회장, 대학평의회 학생대표, 일반학생 각 1명)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총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2.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
3. 학과,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
4.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3-0-37 대학소통위원회위원회 규정
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